

**서울특별시 광진구 외국인주민 및
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심사보고서**



2023. 3. 14.

복지건설위원회

서울특별시 광진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2029
----------	------

2023. 3. 14.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3. 2. 27.

나. 회부일자 : 2023. 3. 8.

다. 상정일자 : 2023. 3. 13.

2. 안건설명

가. 제안설명자 : 김미영 의원

나. 개정이유

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에게 필요한 재난 상황 관련 정보 제공 및 차별 방지와 인권 옹호 등을 위한 교육과 홍보,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등을 규정하여 이들의 지역 사회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함

다. 주요내용

가. 구청장의 책무(제4조제3항 신설)

나. 재난 상황 시 대피요령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7조제1항제7호, 제7조제2항제12호 신설)

다. 다문화가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·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 (안 제7조제2항제1호 신설)

라. 다문화가족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을 규정 (안 제7조제2항제13호)

마.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시민대상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(안 제7조제3항 신설)

바.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날(제22조)

라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(2023. 3. 4. ~ 3. 8.) 결과 : 별도 의견없음

2)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평가,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윤선영)

☐ 의안번호 제2029호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 2023년 2월 27일 김미영 의원이 제안하여 2023년 3월 13일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·회부된 안건임

☐ 본 안건은 외국인주민과 다문화 가족에게 재난 상황 시 대피 요령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합리한 차별 방지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,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등을 규정하고 이들의 지역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자 제출되었음

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4조 제3항에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함
- 안 제7조제1항 제7호와 안 제7조제2항12호는 재난 상황 시 대피요령 정보를 제공하고
- 안 제7조제2항제1호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
- 안 제7조제2항제13호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 신설
- 안 제7조제3항은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시민대상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

□ 위 내용들은 다문화가족정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

- 안 제22조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날과 관련된 내용으로 매년 7월 1일부터 7월7일까지 열리는 여성주간에 실시한 행사를 변경해 ‘매년 5월 20일로 지정된 세계인의 날과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의 기간인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’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음

□ 이는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19조에 의거한 것으로 타당하다고
사료됨

□ 동 조례안과 관련한 서울시 및 타 구 자치단체를 비교해보면 다음과
같음

- 「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 제7조(지원의 내용 및 범위)
- 서울시 자치구 「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 (9개)
 - ▶ 성동구, 도봉구, 금천구, 은평구, 구로구, 서대문구, 영등포구,
노원구, 동작구
- 「거주외국인 지원 조례」 및 「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 (14개)
 - ▶ 강남구, 강동구, 강북구, 관악구, 동대문구, 마포구, 서초구, 성북구,
양천구, 용산구, 종로구, 중구, 중랑구, 송파구
- 「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: 강서구 (1개)

□ 광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현황을 살펴
보면 총 21,653명임(22년 11월 1일 기준/통계청 자료)

< 광진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현황>

(단위:명)

총 계(G)	외국인(F)	다문화가족 : 4,047			근로자(D)	유학,기타(E)
		결혼이민자(A)	국적취득자(B)	다문화가족 자녀(C)		
21,653	18,704	1,098	1,739	1,210	2,567	15,039

○ 외국인주민현황

: 18,704(F) = 결혼이민자(A) + 근로자(D) + 유학, 기타(E)

○ 다문화가족 : 결혼이민자(A) + 국적취득자(B) + 다문화가족자녀(C)

□ 참고로 광진구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 국가별 인구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

〈광진구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 국가별 인구 현황〉

(단위:명)

합 계	중 국 (한국계)	중국	베트남	일본	미국	대만	몽골	대만	기타
2,837	1,425	534	242	123	91	66	64	62	230
100%	50.2%	18.8%	8.4%	4.3%	3.2%	2.3%	2.3%	2.2%	8.1%

□ 현재, 광진구청에서 지원되고 있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음

▶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,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

- 센터 운영비, 종사자 수당 및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비 지원

▶ 다문화가족 문화체험: 한국문화체험 및 문화활동 지원

▶ 외국인지원 및 인식개선사업

- 각종 생활 정보제공, 홍보 및 인식개선 도모

▶ 다문화가족 정착 자립지원 강화사업

- 다문화가족 사회참여 활성화 및 지역사회 조기정착 지원

□ 소요예산은 총 654,471천원임

(국비 139,185천원, 시비 401,550천원 구비 113,736천원)

▶ 예산과목 : 가정복지과, 외국인지원, 다문화가족지원, (세부사업)

▶ 사업별 예산

-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: 241,871천원(국 49,542천원, 시 192,329천원)
-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: 298,864천원(국 89,643천원, 시 209,221천원)
- 다문화가족 문화체험 : 15,450천원(전액 구비)
- 외국인지원 및 인식개선사업 : 91,386천원(전액 구비)
- 다문화가족 정착 자립지원 강화사업: 6,900천원(전액 구비)

□ 종합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전 및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음
-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회적 변화에 따른 발전된 정책을 설계할 시점에서 본 개정조례안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

- 이번 조례안의 취지에 부합되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
-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회의록 참조

5. 토론

- 회의록 참조

6. 심사결과

-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